



제00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정책위원회로의 개편 및
소속기능 변경 등〉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3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정책위원회로의 개편 및 소속·기능 변경	2
2. 공익위원 구성방법 개편	12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27일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두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1. 최저임금위원회의 임금정책위원회로의 개편 및 소속·기능 변경 (안 제4조제2항, 제8조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고용노동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근로자의 임금 정책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의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2항, 제8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u>최저임금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임금정책위원회가</u> -----.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u>고용노동부장관은</u> 매년 8월 5일까지 <u>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u>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u>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u>제12조에 따른 임금정책위원회는</u> 매년 8월 5일까지 <u>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u>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정부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위원회는-----

-----.

② -----

-----위원회는-----

-----.

제4장 임금정책위원회

제12조(임금정책위원회의 설치) 근로자 임금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임금정책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
-----.

1. 근로자의 임금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의 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
3.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의

<u><신 설></u> 1. 최저임금에 관한 <u>심의 및 재심의</u>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u>심의</u>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u>연구 및 건의</u> 4. 그 밖에 <u>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u>	<u>적정 수준에 관한 심의</u> 4. <u>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 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되는 경제·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u> 5. -----<u>심의·재심의 및 의결</u> 6. ----- -----<u>심의·의결</u> 7. ----- <u>연구</u> 8. -----<u>임금정책 및 최저임금 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 이</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최저임금 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인,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인의 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어 있음.¹⁾

1)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때는 노사대표가 직접 교섭을 하고 공익위원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위원회 방식을 활용하는 사례(영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가 다수 있으며, 이외에 일반 법률의 제·개정절차와 동일하게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미국, 브라질, 칠레 등) 및 단체협약 방식(벨기에) 등이 있음.

[표] 주요 국가별 최저임금 결정방식

구 분	내 용	도입 국가
위원회방식	노사(정)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영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법정방식 (국회결정)	일반 법률의 제·개정절차와 동일	미국, 브라질, 칠레 등
단체협약방식	단체협약으로 결정	벨기에
기타	노동법에 따라 조정된 최저임금을 주 정부가 채택	스위스(제네바주)
	단체협약 평균임금에 연동하되 각종 지표 등을 반영하여 정부 결정	네덜란드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2024 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도」, 2024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현행 최저임금결정방식(위원회방식)의 기본취지는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나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나, 최근 최저임금결정과정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사례가 다수 있음.²⁾

이에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과정에 환류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바,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 고용부장관 소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인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할 경우,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및 중장기적 경제·사회정책과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표] 연도별 최저임금 조정 현황

적용연도	최 저 임 금 안 의 결		
	임금액	인상률	의결방법
2025	10,030	1.7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24	9,860	2.5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23	9,620	5.0	공익(안)의결
2022	9,160	5.05	공익(안)의결
2021	8,720	1.5	공익(안)의결
2020	8,590	2.87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19	8,350	10.9	공익(안)의결
2018	7,530	16.4	근로자측 최종(안)의결
2017	6,470	7.3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16	6,030	8.1	공익(안)의결
2015	5,580	7.1	공익(안)의결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개편하며 최저임금 외에도 임금정책, 임금에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적정 임금격차심의 등의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우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법의 주된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인데,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 적정 임금격차 등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근거규정을 최저임금법에 규정하는 것이 현행법의 입법체계상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정책 및 이와 관계된 경제, 사회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³⁾ 임금정책위원회에서 적정 임금격차, 임금에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기능상 중복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속 변경은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중요성,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조정이 필요한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3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산업·경제·복지 및 사회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지 여부 및 현재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있는 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유사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기준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19개이며, 이 중 행정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1개이고, 자문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18개임.

[표]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명	근거법령	설치일자	법령상 위원수
행정 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1998.4.18	25인
자문 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1999.5.24	18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	2011.7.20	40인 이내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인적자원개발기본법	2007.7.27	30명 이내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2.3.25.	50명 이상 100명 이내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010.1.13.	60인 이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2008.6.22	30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4.25.	30명 이내
	국가도서관위원회	도서관법	2007.4.5	26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에 관한 특별법	2007.3.27	30명 이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05.1.1	16명 이상 20명 이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05.5.18.	25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019.9.11.	30명 이내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023.7.10.	39명 이내

	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진흥법	2005.12.1.	30명 이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6.6.	45명 이내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5.30.	39명 이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7.1.	30명 이내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	2019.6.13.	50명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정책과 분리하기 어려워, 정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통령 소속인 임금정책위원회가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기능을 가질 경우 최저임금 결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현행 최저임금법 체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임.

2. 공익위원 구성방법 개편(안 제14조)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서 공익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 ⑤ (생략) ⑥ 위원의 자격과 <u>임명</u>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익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u>추천·임명</u> ----- ----- -----.

나. 검토의견

현재 공익위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임.

[표] 공익위원 위촉기준

현 행 법	개 정 안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회 추천 9명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할 때는 노사대표가 직접 교섭을 하고 공익위원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나,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전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위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실제로 최근 최저임금결정현황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사례가 다수 있음.⁴⁾

4) 연도별 최저임금 조정 현황

적용연도	최 저 임 금 안 의 결		
	임금액	인상률	의결방법
2025	10,030	1.7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24	9,860	2.5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23	9,620	5.0	공익(안)의결
2022	9,160	5.05	공익(안)의결
2021	8,720	1.5	공익(안)의결
2020	8,590	2.87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19	8,350	10.9	공익(안)의결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공익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안 심의·의결과정에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을 낮추고, 헌법상 권력분립기관간의 다면적인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에서 추천(선출·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하고 있음.

[표] 국회에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입법례

구 분	내 용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헌법」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헌법」 제114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가위원회법」 제5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3명 ○대통령 임명 9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2018	7,530	16.4	근로자측 최종(안)의결
2017	6,470	7.3	사용자측 최종(안)의결
2016	6,030	8.1	공익(안)의결
2015	5,580	7.1	공익(안)의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국회의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사립학교법」 제24조의3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임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안의 입법여부는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결정과정에 개입해야 하는 당위성과 국회에서 공익위원 선출이 첨예한 쟁점이 되어 동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이 동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저소득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모든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면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고, 공익위원의 전문성 및 기타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바 공익위원 위촉 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0